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 발주기관 : 순창군청
○ 제조사 · 공급사 : ㈜시스젠
○ 제 품 명 : Fujitsu DX600 S3(1대), 도시안전망 서버(2대), 네트워크 보안 장비(망연계 1대, L3 스위치 1대, 방화벽 1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사업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 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금일천팔백이십삼만칠천원(₩18,237,000) VAT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시스젠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시스젠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 년 09 월 일

발 주 기 관 명 순창군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스젠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 **발주기관 :** 순창군청

○ **제조사 · 공급사 등 : ㈜누리콘**

○ **제 품 명 : ViewFlex**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사업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 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금육백칠십칠만일천사백육십원(₩6,771,460) 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누리콘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누리콘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8월 20일

발 주 기 관 명 순창군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누리콘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 **발주기관 :** 순창군청

○ **제조사 · 공급사 등 : ㈜새눈**

○ **제 품 명 : XEUS TVIUS, DRM, NE-TIS, GIS, NE-BOARD, 가상화솔루션 도시안전망(TMS, Web_GIS, Web_GIS서버,영상중계서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사업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 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금삼천일백사십육만칠천이백사십원(₩31,467,240) 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새눈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새눈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8월 일

발 주 기 관 명 순창군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새 눈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 **발주기관 :** 순창군청

○ **제조사 · 공급사 등 :** 이노뎁

○ **제 품 명 : VURIX, VUCatcher(선별관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사업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 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금삼천육백구십육만원(₩36,960,000)**

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이노뎁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이노뎁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8월 일

발 주 기 관 명 순창군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이 노 뎁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 사업 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 순창군청
○ 제조사 . 공급사 : 주식회사 나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 사업 유지보수(도시안전허브 S/W 1식 1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0,440,000원/12개월,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명　　순창군청　　(인)

제조사 . 공급사명　　주식회사 나무　왕현석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 사업 유지보수
○ 발 주 기 관 : 순창군청
○ 제조사 . 공급사 : 주식회사 나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 사업 유지보수(XEUS GATE v2.0(영상중계 S/W) 1식, 위안미디어 STD V2.5(경찰청 RTSP 스트리밍 S/W 1식, 엑스게이트(AXGATE 200) 1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424,800원/12개월,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명　　순창군청　　(인)

제조사 . 공급사명　　주식회사 나무　왕현석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 발주기관 : 순창군청
○ 제조사 · 공급사 등 : ㈜시큐아이
○ 제 품 명 : SECUI BLUEMAX 2000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사업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 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금삼백칠십만일천원(₩3,701,000) VAT포함으로 한다.

서비스사업그룹 02956005661787719517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시큐아이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시큐아이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8월 일

발 주 기 관 명 순창군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큐아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 발주기관 : 순창군청
○ 제조사 · 공급사 등 : ㈜시큐어키
○ 제 품 명 : APPM For CCTV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사업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 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금이백팔십칠만일천원(₩2,871,000) 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시큐어키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시큐어키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8월 일

발 주 기 관 명 순창군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큐어키 (인)